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 - 71호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임실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마. 지원중단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사.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조항(안 제10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난임, 유산·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

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사산에 따른 진료·약제비 지원
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4.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난임, 유산·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나. 관련조문 : 임실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난임, 유산·사산 극복 시술비 지원

나. 비용추계의 결과

- 21,000천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3,600천원 / 난임부부 한방 시술비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년도	편성목	산출근거	예산액	비고
2025	의료 및 회복비	1,000,000원*21명	21,000	
2025	의료 및 회복비	1,800,000원*2명	3,600	

3. 재원조달방안 : 도비 및 군비 조달

4. 연도별 비용추계표(2025~2029) : 별첨 참조

5. 작성자 : 정일윤 의원

<별첨>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입							
세출		24,600	24,600	24,600	24,600	24,600	123,0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1,000	21,000	21,000	21,000	21,000	105,000
한방 시술비 지원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재원 조달		16,830	16,830	16,830	16,830	16,830	84,150
의 존 재 원	소계	16,830	16,830	16,830	16,830	16,830	84,150
	국비						
	도비	16,830	16,830	16,830	16,830	16,830	84,150
	...						
자 체 재 원	소계	7,770	7,770	7,770	7,770	7,770	38,85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7,770	7,770	7,770	7,770	7,770	38,850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